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50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윤준병 · 박희승 · 김의겸
朴芝源 · 이춘석 · 박용갑
박홍배 · 전용기 · 송옥주
양부남 · 권칠승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문자메시지와 정보통신망의 접근성이 평등해진 상황에서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협동조합 등의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음(2020헌바349, 2024헌가7).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포함을 허용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발송횟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기본권 보장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66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를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로, “방법”을 “방법.”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송방법·전송횟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66조제2항제5호 중 “제28조에 따른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을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통화방법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간대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 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자(<u>문자 외의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u>)메시 지를 전송하는 방법 <단서 신설>	2. ---- <u>음성 · 화상 · 동영상 등 을 포함한다</u> ----- -----방법. 다만, <u>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 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 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하는 경우</u> <u>에는 전송방법 · 전송횟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전송하 여야 한다.</u>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① (생 략)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u>제28조에 따른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u> <u><신설></u> 6. ~ 13. (생략)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통화방법을</u>----- ----- 5의2. <u>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간대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u> 6. ~ 13. (현행과 같음)
--	---